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ited States: IRS update to jurisdiction status table, country-by-country reporting](#)

미국: 미 국세청,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국가 현황 업데이트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지난달 21 일, 미국과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Competent Authority Arrangements, CAAs) 체결 국가 현황(Country-by-Country Reporting Jurisdiction Status Table)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IRS 가 발표한 현황에는 최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당국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별 협정문(Agreement)과 협정 서명일 및 시행일, 그리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기업 본사가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 국가별 사업활동에 관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서는 별도로 양자간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s)'과 '조세정보 교환협정 및 조세행정상호공조 협약(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or the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1 December 2017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Matters)'에 근거한 본 당국간 협정에 따라 협정 체결국들과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42개국이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당국간 협정에 참여(체결완료 30개국, 협상 진행 12개국)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국가 현황]

No.	조세관할 지역	협정문	서명일	시행일
1	Australia	DTC CAA (pdf)	2017/8/1	2017/8/1
2	Belgium	DTC CAA (pdf)	2017/7/20	2017/7/20
3	Canada	DTC CAA (pdf)	2017/6/7	2017/6/7
4	Czech Republic	DTC CAA (pdf)	2017/9/28	2017/10/25
5	Denmark	DTC CAA (pdf)	2017/6/21	2017/6/21
6	Estonia	DTC CAA (pdf)	2017/7/26	TBD
7	Finland	DTC CAA (pdf)	2017/9/27	2017/9/27
8	France	DTC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9	Germany	DTC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10	Greece	DTC CAA (pdf)	2017/9/27	TBD
11	Hungary	DTC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12	Iceland	DTC CAA (pdf)	2017/5/5	2017/5/5
13	Ireland	DTC CAA (pdf)	2017/6/15	2017/6/15
14	Israel	DTC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15	Italy	DTC CAA (pdf)	2017/9/27	2017/9/27
16	Latvia	DTC CAA (pdf)	2017/6/21	2017/6/21
17	Luxembourg	DTC CAA (pdf)	2017/10/18	2017/10/18
18	Mexico	DTC/TIEA CAA (pdf)	2017/10/19	2017/10/19
19	Netherlands	DTC CAA (pdf)	2017/4/11	2017/4/11
20	New Zealand	DTC CAA (pdf)	2017/5/11	2017/5/11
21	Norway	DTC CAA (pdf)	2017/4/26	2017/4/26
22	Poland	DTC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23	Portugal	DTC CAA (pdf)	2017/10/2	2017/10/2
24	Republic of Korea	DTC CAA (pdf)	2017/6/22	2017/6/22
25	Slovakia	DTC CAA (pdf)	2017/6/21	2017/6/21
26	Slovenia	DTC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27	Spain	DTC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28	Sweden	DTC CAA (pdf)	2017/9/28	2017/9/28
29	United Kingdom	DTC CAA (pdf)	2017/8/16	2017/8/16
30	Bermuda	TIEA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31	Brazil	TIEA CAA (pdf)	2017/7/20	2017/7/20
32	Colombia	TIEA CAA (pdf)	2017/8/30	2017/8/30
33	Guernsey	TIEA CAA (pdf)	2017/6/22	TBD
34	India	DTC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35	Isle of Man	TIEA CAA (pdf)	2017/7/20	2017/7/20
36	Jamaica	DTC CAA (pdf)	2017/7/20	TBD
37	Jersey	TIEA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38	Liechtenstein	TIEA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39	Lithuania	DTC CAA (pdf)	2017/8/30	2017/8/30
40	Malta	DTC CAA (pdf)	2017/7/20	TBD

41	Mauritius	TIEA CAA	협상 진행 중	협상 진행 중
42	South Africa	DTC CAA (pdf)	2017/5/26	2017/5/26

[Taiwa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o include country-by-country reporting, Master file](#)

대만: 통합기업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하는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개정안 발표

지난 11월 13일, 대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OECD BEPS Action Plan 13(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보고서는 총 3단계로, 국외특수관계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정보 및 이전가격 결정 근거자료를 포함하는 '로컬파일(Local File, 기존 이전가격보고서)'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운영 및 이전가격 정책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마스터 파일(Master file, 신규 추가)', 그리고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 정보를 포함하는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신규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기업보고서, 기존 이전가격보고서]

1. 작성·제출 대상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NTD 300 million (약 11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자 거래 합계액이 NTD 200 million (약 7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포함됨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전가격보고서로 대체 가능)

2. 제출의무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대만 현지법인

3. 준비기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구비(2017년 규정 시행 시, 2018년 5월31일)

4. 제출기한

과세당국의 서면 요청 시 대만 소재 종속기업은 1달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달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통합기업보고서, 새로 추가된 보고서]

1. 작성·제출 대상

미정

2. 제출의무자

다국적기업 그룹의 대만 현지법인 또는 대만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3. 준비기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구비(2017년 규정 시행 시, 2018년 5월31일)

4.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달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가별보고서, 새로 추가된 보고서]

1. 작성·제출 대상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일정 규모 기준(미정, TWD 27 billion (약 1조원) 예상)을 초과하는 경우

2. 제출의무자

대만 소재 최상위 지배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리인 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대만 현지법인*

3. 준비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4.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달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대만과 조세정보 교환협정 등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 요청 시 1달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또는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소재 국가의 법령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만 과세당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OECD: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statistics for 2016](#)

OECD: 2016년도 상호합의절차(MAP) 통계자료 발표

BEPS의 Action 14(조세분쟁 해결의 효율화)에 따라 OECD와 G20 국가들은 조세조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상호합의절차 통계자료의 발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호합의 사례에 대한 연간 통계자료는 해당 자료의 수집에 동의한 모든 국가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OECD는 2016 년도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중국, 독일 등 일부 주요 국가들의 통계자료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도 상호합의절차(MAP) 통계자료]

구분	이월건수	발생건수	종결건수	잔여건수
호주	32	22	12	42
체코	33	17	4	46
독일	1177	353	350	1180
일본	103	36	25	114
한국	144	22	35	131
미국	972	179	184	967
중국	160	32	84	108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통계자료 중 이전가격과세 혹은 이전가격 사전승인 관련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도 이전가격 관련 상호합의절차(MAP) 통계자료]

구분	이월건수	발생건수	종결건수	잔여건수
호주	23	12	8	27
체코	19	8	2	25
독일	545	109	135	519
일본	95	33	22	106
한국	86	18	26	78
미국	716	130	145	701
중국	113	21	60	74

발표된 상호합의절차 통계자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도 상호합의절차 통계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 수집에 동의한 조세관할구역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호합의 발생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상호합의 이월건수는 총 8,000 건이며, 이 중 약 25%가 2016년도 중에 종결되었습니다.
- 2016년도 중의 상호합의 발생건수는 총 1,500 건이며, 이 중 약 25%가 2016년도 중에 종결되었습니다.
- 상호합의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이전가격과세 혹은 이전가격 사전승인 관련 사례이며, 이전가격 관련 사례의 경우 종결까지 평균 약 30개월, 타 사례의 경우 종결까지 약 17개월이 소요되어 이전가격 관련 사례가 상호합의에 도달하는 데 평균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ustralia: ATO grants extension of time to file country-by-country statements

호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호주 국세청(The Australia Taxation Office, ATO)는 2017년 11월 24일부로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포함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12월 결산법인 및 1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15일까지 연장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말 기준 1년 이내였으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 1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 31일이었습니다.

개정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법안은 최초 보고연도인 올해에만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18년 2월 15일까지 제출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으나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계연도 말 기준 1년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호주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대상에 대한 기준(Threshold)은 연결 매출 10억 AUD(약 8,500억 원)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에도 적용가능)입니다.

BEPS 방지를 위한 OECD 다자협약에 관한 설명회 안내

우리나라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6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다자협약의 내용과 다자협약으로 인한 우리나라 조세 조약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주제는 "1) 혼성불일치, 2) 조약남용, 3)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4) 분쟁해결 개선 및 중재"로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특히 '4) 분쟁해결 개선 및 중재'에서는 국세청 국제협력과에서 다년간 상호합의절차(MAP) 및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APA) 업무를 담당한 김상훈 상무(삼정회계법인)로부터 'MAP/APA에 대한 최근 동향과 실무적인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으로, 국가간 이중과세 이슈로 MAP/APA를 고려 중인 법인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일시:	2017년 12월 15일 (금) 14:00 ~ 17:00	
장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프로그램:	13:40 ~ 14:00	등록
	14:00 ~ 14:05	개회사
	14:05 ~ 14:20	Opening Session
	14:20 ~ 15:20	1 st Session 혼성불일치 2 nd Session 조약남용
	15:20 ~ 15:30	Break Time
	15:30 ~ 16:30	3 rd Session 고장사업장 지위회피 4 th Session 분쟁해결 개선 및 중재
	16:30 ~ 16:40	Break Time
	16:40 ~ 17:00	객석 질의응답 및 마무리
참가비	무료	
문의 및 신청	E-mail: mjkang@kipf.re.kr 로 12/13(수)까지 신청 Tel: (044)414-226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미정 전문연구원)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